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수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93 발의연월일: 2022. 1. 20.

발 의 자: 김수흥·강선우·고용진

김교흥 · 김주영 · 서영석

신영대 · 안규백 · 양정숙

정일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제11조의3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음에 반하여, 현행법에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관하여는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등 남성농어업인을 여성농어업인과 달리 취급하고 있음.

이에 모든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남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의 차별을 시정하는 한편, 농어업인의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(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4항 중 "건강검진에"를 "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하고 이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제5항 중 "조사"를 "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, 검강검진의 시기·항목"으로 한다.

다만,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농어업인 질환의 예방·치	제14조(농어업인 질환의 예방·치
료 등 지원) ① ~ ③ (생 략)	료 등 지원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	4
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	
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	
농어업인의 <u>건강검진에</u> 필요한	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
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	실시하여야 하고 이에
할 수 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
	<u>다만, 「여성농어업</u>
	인 육성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
	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
	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
	<u>을</u> 하지 아니한다.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	5
른 <u>조사</u> 및 지원에 필요한 사	<u>농어업인의 질환 현황 조사,</u>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검강검진의 시기·항목</u>
	,